#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준호의원 발의)

의 안 번 호 465

발의연월일: 2024. 6. 13.

발 의 자: 한준호 의원

찬 성 자 : 169인

#### 제안이유

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(이하 "문화방송"이라함)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·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 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,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 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,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.

또한, 현행법은 문화방송의 사장의 임기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문화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사 장이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도록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 이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추천한 자가 문화방송의 사장으로 선임된 경우 그 사장의 임기를 규정하고,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문화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- 가.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,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,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함(안 제6조 등).
- 나. 방송문화진흥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장 후보 자를 추천하도록 하고,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 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 및 제10조의3 신설 등).
- 다.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이 진흥회가 추천한 자로 선임된 경우 그 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,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임기를 보장하도록 함(안 제10조의4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본문 중 "9명"을 "21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,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 한다.
- 1.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. 이 경우 각 교섭단체는 성별(性別)로 각각 1명 이상을 추천(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여야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.
- 2.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6명(지역방송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한다). 이 경우 성별로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3. 진흥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. 이 경우 성별로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4.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, 제작,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

- 여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
- 가. 방송기자연합회 추천 2명
- 나. 한국피디연합회 추천 2명
- 다.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추천 2명
-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,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며, 공모·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.
-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이사를 임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0조제10호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의3에 규정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 이하의 복수의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 시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,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, 다수득표자를 추천한다.
- ⑥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

추천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.

제10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의2. 제10조의3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0조의3(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) ① 이사회에 진흥회가 최 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국민위원회 (이하 "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, 연령,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③ 이사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,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.
  - ④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를 3명 이하의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.
  - 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  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 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 회가 정한다.

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0조의4(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의 임기 등) ①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이 진흥회가 추천한 자로 선임된 경우 그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(意思)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.
  - 1.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- 2. 「방송법」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- 3.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  - 4.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6조(임원) ① 진흥회에는 임원 제6조(임원) ① -----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의 이사와 감사(監事) 1명을 두 며,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다. 다만,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다. ② • ③ (생 략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,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 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명한다.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 위원회가 임명한다. 1.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 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 명. 이 경우 각 교섭단체는 성별(性別)로 각각 1명 이상 을 추천(교섭단체가 1명을 추 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여 야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 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2.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 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

천하는 사람 6명(지역방송 관 런 학회가 추천하는 2명을 포 함한다). 이 경우 성별로 각 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- 3. 진흥회의 정관으로 정하는
  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. 이 경우 성별로 각각
  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4.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,
   제작,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
   가. 방송기자연합회 추천 2명
   나. 한국피디연합회 추천 2명
   다.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추천 2명
   천 2명
-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 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, 이 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 하며, 공모·의견수렴 등의 과 정을 거쳐야 한다.
- ⑥
   방송통신위원회는
   제4항에

   따라
   이사를
   임명한
   경우에는

<신 설>

<u><신</u>설>

⑤ • ⑥ (생 략)

(생 략)

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단서 신설>

<u><</u>신 설>

<신 설>

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⑦·⑧ (현행 제5항 및 제6항 과 같음)

제9조(이사회의 구성) ① ~ ③ | 제9조(이사회의 구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----.. 다만, 제 10조제10호에 따른 방송문화진 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 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의3에 규정된 사장후보국 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 이 하의 복수의 사장후보자에 대하 여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이 추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 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에 대하여,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, 다수득표자를 추천한다.

⑥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

⑤ • ⑥ (생략)

제10조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제10조(이사회의 기능) ------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 결한다.

1. ~ 10. (생략) <신 설>

11. (생략) <신 설>

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추천 시 그 절차와 과정 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 로 진행하여야 한다.

⑦・⑧ (현행 제5항 및 제6항 과 같음)

1. ~ 10. (현행과 같음) 10의2. 제10조의3의 사장후보국 민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11. (현행과 같음)

제10조의3(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 회 설치 등) ① 이사회에 진흥 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 한 국민위원회(이하 "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"라 한다)를 둔 다.

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, 연령, 지역 등을 고려하 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③ 이사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 하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

<신 설>

야 하며,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 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.

- ④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를 3명 이하의 복수 로 추천하여야 한다.
- 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국 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.

제10조의4(진흥회가 최다출자자 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의 임기 등) ①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이 진흥회가 추천한 자로 선임된 경우 그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(意思)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.

- 1.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. 「방송법」 제13조제3항 각

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
   경우
- 3.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진흥회가 최다출 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- 4.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경우